

1. 개정이유

동 개정안은 「신용협동조합법」 개정안이 공포('26.04.21)되어 시행 예정('26.10.22)임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상임감사 의무선임 기준 및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매입 대상 자산 등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신용협동조합 상임감사 선임기준 구체화(시행령안 제14조 제5항·제6항)

- 법 제27조제8항 전단의 “자산총액이 3천억원 이상인 조합 중 자산 규모, 조합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”을 자산총액 3천억원 이상인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으로 규정
- 법 제27조제8항 전단의 “자산총액이 2천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”을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인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이나 조합 이사회가 건전성 관리, 내부통제 강화 및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상임감사의 선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합으로 규정

나.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매입 대상 자산 구체화(시행령안 제19조의17, 제19조의18, 제24조의2제5항)

- 법 제80조의8 제1항의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업무용 자산”을 조합 등의 부실채권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, 경영관리·재무상태 개

선조치에 따라 처분해야 하는 고정자산 등으로 규정하고, 인수된
부실자산의 인수가격 산정기준을 구체화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5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법 제27조제8항에 전단 중 “자산총액이 3천억원 이상인 조합 중 자산 규모, 조합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”이란 자산총액이 3천억원 이상인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을 말한다.

제14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법 제27조제8항에 전단 중 “자산총액이 2천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”이란 자산총액이 2천억원 이상인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이나, 조합 이사회가 건전성 관리, 내부통제 강화 및 금융 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상임감사의 선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합을 말한다.

제19조의17 및 제19조의1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9조의17(비업무용 자산) 법 제80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“부실채권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업무용 자산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
1. 법 제80조의8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부실채권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
2. 조합이 법 제86조에 따른 경영관리 및 법 제89조제4항에 따른 재무상태의 개선을 위한 조치에 따라 처분해야 하는 고정자산(임차보증

금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

3. 조합이 합병·사업양도·계약이전 등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고정자산

4. 법 제80조의8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영개선 등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고정자산

제19조의18(부실자산 인수가격의 산정 등) ① 법 제80조의8제1항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(이하 “관리회사”라 한다)가 법 제80조의9에 따라 법 제80조의8제1항에 따른 부실자산(이하 “부실자산”이라 한다)을 인수하는 경우에 그 인수가격은 인수대상인 부실채권의 담보물건 또는 비업무용 자산에 대하여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가격 등 객관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, 선순위의 채권·물권 및 임차권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부실자산의 가격을 사전에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인수계약 체결 시 부실자산의 인수가격과 처분가격간의 차액을 사후에 정산하는 것을 계약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.

제24조의2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관리회사는 법 제80조의9에 따른 부실자산의 매입·매각, 보전·추심 등 관리회사의 업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14조(이사장 등을 상임으로 선임하여야 하는 조합 등의 범위 등) ① ~ ③ (생략)	제14조(이사장 등을 상임으로 선임하여야 하는 조합 등의 범위 등) ① ~ ③ (생략)	제14조(이사장 등을 상임으로 선임하여야 하는 조합 등의 범위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		
④ 삭제	④ 삭제	⑤ 법 제27조제8항에 전단 중 “자산총액이 3천억원 이상인 조합 중 자산규모, 조합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”이란 자산총액이 3천억원 이상인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을 말한다. -----		
⑤ 법 제27조제8항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평균잔액으로 계산한 총자산이 2천억원 이상인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은 감사 중 1명을 상임으로 한다. 다만, 제12조제1항제3호가목, 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단체조합으로서 해당 조합의 특성,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은 조합은 상임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.	⑤ 법 제27조제8항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평균잔액으로 계산한 총자산이 2천억원 이상인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은 감사 중 1명을 상임으로 한다. 다만, 제12조제1항제3호가목, 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단체조합으로서 해당 조합의 특성,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은 조합은 상임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.	⑤ 법 제27조제8항에 전단 중 “자산총액이 3천억원 이상인 조합 중 자산규모, 조합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”이란 자산총액이 3천억원 이상인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을 말한다. -----		
<신 설>	<신 설>	⑥ 법 제27조제8항에 전단 중 “자산총액이 2천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”이란 자산총액이 2천억원 이상인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이나, 조합 이사회가 건전성 관리, 내부통제 강화 및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상임감사의 선		

<신 설>

<신 설>

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합을 말한다.

제19조의17(비업무용 자산) 법 제80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“부실채권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업무용 자산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
1. 법 제80조의8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부실채권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
2. 조합이 법 제86조에 따른 경영관리 및 법 제89조제4항에 따른 재무상태의 개선을 위한 조치에 따라 처분해야 하는 고정자산(임차보증금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
3. 조합이 합병·사업양도·계약이전 등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고정자산
4. 법 제80조의8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영개선 등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고정자산

제19조의18(부실자산 인수가격의

제24조의2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
정보의 처리) ① ~ ④ (생략)

산정 등) ① 법 제80조의8제1항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(이하 “관리회사”라 한다)가 법 제80조의9에 따라 법 제80조의8제1항에 따른 부실자산(이하 “부실자산”이라 한다)을 인수하는 경우에 그 인수가격은 인수대상인 부실채권의 담보물건 또는 비업무용 자산에 대하여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가격 등 객관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, 선순위의 채권·물권 및 임차권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부실자산의 가격을 사전에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인수계약 체결 시 부실자산의 인수가격과 처분가격간의 차액을 사후에 정산하는 것을 계약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.

제24조의2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
정보의 처리) ① ~ ④ (현행과
같음)

<신 설>

⑤ 관리회사는 법 제80조의9에 따른 부실자산의 매입·매각, 보전·추심 등 관리회사의 업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